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59
----------	------

2017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윤희 의원·이성희 의원(찬성자 17명)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이윤희 의원·이성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2)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3)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 (4)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5)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옥)

#### 가. 조례 제정 개요

- 동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의 추진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실제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 청년예술단 등의 계획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실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예술인 131,322명 중에 38%인 49,317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서울시는 2016년 10월에 수립한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서울 예술인들의 복지 및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임을 밝혔고<sup>1)</sup>,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이 전반적으로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특히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시행되었으나, 예술인 자격 기준이 높아<sup>2)</sup>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삼았으나 실적이 없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전국 예술인의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1) 도시연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예술인 활동부문'으로 연구대상 40개 도시 중 35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2015, 모리기념재단)

2)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의 "예술인"의 자격 인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따라 저작물, 소득 등 양적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부여됨.

법적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들마저도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는 조사대상의 많은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예술인들의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표 1〉 예술인들의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연 번	질의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예술정책 만족도	0.3	4.8	20.8	41.7	32.5
2	예술인의 사회적평가	0.5	7.9	23.5	39.3	28.9
3	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수준	0.2	1.4	12.0	38.3	48.1
4	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0.8	9.3	24.3	41.5	24.1
5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0.9	4.3	17.2	45.0	32.6
6	예술활동의 외부규제 많음	13.1	27.3	33.2	22.2	4.3
7	정책결정시 예술계 의사반영	0.1	2.9	22.9	42.1	32.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2015

## 나. 조례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윤희(더불어민주당, 성북1), 이성희(자유한국당, 강북2) 의원이 발의하였음.
- 동 조례안과 유사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2013년 10월 제정)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등 9개 지자체로 해당 조례는 모두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경우, 비교적 최근(2016.11.23.)에 일부개정을 통해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사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1	경상북도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5.30.
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2.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30.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4.3.18
5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5.17

- 서울시는 2017년 예산편성을 통해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표 3〉과 같이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표 3〉 예술인 복지 관련 서울시 2017년 예산

연번	소관 실국	세부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사업내용
1	문화본부	서울청년예술단	5,550	청년예술인 예술단체 공모 선정 및 작품활동비 지급
2	문화본부	예술청조성	60	예술인 상담·교류·발표공간 조성
3	주택건축국	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포괄예산)	6,500	예술인 주택 공급
4	경제진흥본부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 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5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5	서울문화재단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	200	예술인 민간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6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7,500	최초·유망예술지원
7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지원사업	550	예술인 후원사업
<b>총 액</b>			<b>20,365</b>	

##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등(안 제4조부터 제6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8조), 예술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9조부터 제10조), 보칙(안 제11조부터 제12조) 등을 규정함.

〈표 4〉 동 조례안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
제2조	정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인’의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예술인 지위·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제4조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제6조	실태조사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제8조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기본계획, 복지 증진 사업 등의 심의를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제10조	협력시스템 구축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제11조	사무의 위탁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민간위탁
제12조	시행규칙	
부칙		

〈표 5〉 「예술인 복지법」 조문 체계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예술인 보호 및 창작활동 증진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제2조	정의	‘문화예술’, ‘예술인’ 등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정당한 존중, 권리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책무
제4조의2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정책 기초 자료로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실시
제4조의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 용역의 공정한 계약 및 성실한 이행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장관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 마련 의무
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3	재정지원의 중단 등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규정
제3장 사회보장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름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제9조	정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관 기재사항
제10조	재단의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제10조의2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경비마련 방안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 사용금지
제12조	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임원
제13조	이사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사회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제15조	감독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감독
제5장 보칙		
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제17조	과태료	
부칙		

##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조례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시장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두고 있음.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으로 두고 있는 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고도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동 조례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의 사용 범위를 증빙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예술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정의)의 경우,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예술인” 정의 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

이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따라 예술인 스스로 저작물, 소득 등 양적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복지 혜택이 절실한 신진·취약계층 예술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바, 조례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범위를 안 제2조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예술인 4대보험, 실업급여 및 의료비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꼼꼼한 증빙을 필요로 하나, 서울시에서는 예술인들의 활동기회 제공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예술인의 범위를 양적 수치를 활용하여 실적을 증빙하게 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예술인의 증명 문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으므로 안 제12조(시행규칙)에 따라 세부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6〉 “문화예술” 및 “예술인” 정의 법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판화를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다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6년 6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수립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① 예술인 노동 및 주거환경 등 예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②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인 성장 도모,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④ 예술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0호로 서울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 예술인 플랜>을 수립한 바 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2,510억원을 42개 사업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음.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조할 예술인의 실태조사 실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7〉 「예술인 복지법」의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동 조제2항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와 제8조는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하고, 서울시에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은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2017년

예술인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상기 <표 3>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동 조의 각호에 명시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임.

안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의 경우,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추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의 2016년 7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거나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에서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고,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설치만이 가능함.

<표 8> 「지방자치법」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조례안의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는 조문에 따라 ‘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2013)』의 해석상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아니어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고 판단됨.

〈표 9〉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법제처, 2013 ]

위원회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법적 효과의 차이, ‘의결한다’, ‘심의한다’ 및 ‘심의를결한다’는 규정 간에 법적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결기관으로 인정되려면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의’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안전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으로 ‘심의한다’는 규정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다른 법적 의미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6. 위원회, 154~155p)

또한, 동 조례2항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만을 분리해 조문에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완벽한 신규 위원회의 설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안 제8조에 의한 서울시 복지 증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조례안과 같은 회기(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안 제2항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협력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경우,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상담 및 지원, 예술 활동 계약 자문,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등의 사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를 2017년 2월 27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시로써 안 제9조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10〉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6길 33,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개 소	2017년 2월 27일
주요 기능	- 법률상담 :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 및 불공정 계약규정 검토, 계약 후 임금 미지급, 성명표시권 침해, 인권침해 등 상담 - 피해구제 : 문체부·공정위 조사 의뢰, 벌률서면 작성 지원 등
구성인원	- 법률상담관(9명)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피해구제 지원 가능 변호사 - 코디네이터(1명) : 상담 예약관리 및 DB구축, 온라인 게시판 관리, 행정 지원
운영방법	- 방문상담(주 1회) : 상담예약 → 상담센터 방문 → 안내 및 상담 → 사후관리 - 온라인상담(수시) :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2017년 예산	450만원

안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과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 창작 환경 및 공공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민·관·예술계의 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메세나<sup>3)</sup>지원사업’을 실행 중에 있고, 비교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후원문화를 정착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문 이므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표 11〉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사업명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창작 환경 및 공공의 문화복지 향상</li> <li>- 민·관·예술계의 협력 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적 이슈 해결</li> <li>- 문화예술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창출</li> </ul>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 예술단체-기업 매칭 지원</li> <li>- 민관협력사업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 예술제휴 사업 기획 및 기업기부금 유치·관리, 기부자/잠재기부자 네트워크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운영</li> <li>- 시민 대상 예술기부 활성화 : 대시민 예술기부 캠페인 추진 및 문화예술 후원금 모금, 온라인 예술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운영</li> </ul>
사업 근거	- 제35대 시장공약 “서울시장이 메세나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2011.10.27.)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예술 결연 및 공공형 예술프로젝트 확대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2012-2016 연속 추진</li> <li>-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 및 재정 안정화 : 기부/협찬 유치 지속 추진, 전략적 제휴 확대</li> <li>- 시민대상 예술기부 활성화 : 온라인 기부플랫폼 2014년 런칭, 예술기부 캠페인 지속 추진</li> </ul>
2017년 예산	5억 5천만원

3) 메세나(Mecenat) :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두산백과)



-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사무의 위탁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데,

안 제11조(사무의 위탁)은 동 조례안 제7조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계획과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의 “예술인” 정의 규정의 경우,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기준으로 정의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이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8조의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조문에 “심의하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위원회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8일

발 의 자 : 이윤희, 이성희 의원(2명)

찬 성 자 : 신원철, 김태수, 유동균,  
김진철, 유 용, 강감창,  
이신혜, 최호정, 맹진영,  
조상호, 성중기, 박중화,  
신건택, 김영한, 박성숙,  
문상모, 김경자(강서) 의원(17명)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다.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마.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간 확충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